
Policy and Law Report _Vol.155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9.26.~ 2022.10.03.) -

October 4,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업계와 함께 자동차 산업 미래전략을 논의함 이번 회의는 최근 자동차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에 대한 對美 협상결과를 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글로벌시장의 급변하는 정세에 민·관이 의기투합하여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을 이끌 수 있는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미래차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Fast but Smooth Transition)과 모빌리티 신산업으로의 자동차산업 경계 확장을 통해 자동차산업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담은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함 4대 전략으로는 ① 전동화 글로벌 탑티어(top-tier) 도약, ② 생태계 전반의 유연한 전환, ③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④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을 제시 글로벌 3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로는 ① '30년 글로벌 전기차 생산 330만대 및 세계시장 점유율 12%, ② 향후 5년간('22~'26) 자동차 업계 투자 95조원+α, ③ '30년까지 미래차 전문인력 3만명 양성	2022-09-28
식품 의약품 안전처	• ‘2022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업계의 아시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2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개최함 2014년부터 국내 화장품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규제 동향과 시장 트렌드를 공유함 *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화장품 전체 수출액의 53% 차지 (48억 8,171만 달러) 중국의 화장품 규제 동향을 다루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① 중국 경제 동향, ② 중국 화장품 안전관리, ③ 중국 화장품 수출입 절차를 소개	2022-09-28

부처	내용	일시
	이어 중국 화장품시장 트렌드에 관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① 중국 화장품시장 진출 성공사례, ② 중국 화장품시장 진출전략, ③ 중국 화장품시장 마케팅에 대해 안내 아울러 중국, 베트남, 태국 등 각국의 구매(대행)사와 국내 화장품 기업(50개사 참여)을 1:1로 연결해주는 온라인 화상 상담회도 개최해 품질이 우수한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로 함	
금융 감독원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규정 개정에 따라 회계감리 절차, 감사인 감독 및 지정제도 개선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감리조사기한 명문화)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하며 조사기한이 연장되면 지체 없이 회사·감사인에게 통지 ② (문답서 조기 열람 및 복사 허용)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피조사자 본인의 문답서 열람·복사 허용 ③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식 구체화) 23개 계량지표는 매년 평가하고, 11개 비계량지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 ④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점검방식 구체화)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서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 및 근거자료를 8년간 보관토록 하였고, 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조치시 이행결과 보고 ⑤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후속조치) 감사인 군 분류 개편 등 지정 방식 개선에 따른 신고서식 마련	2022-09-28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문화체육 관광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3.3.28. 시행 예정)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그러나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Over The Top)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의 급격한 증가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처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적시성이 필요한 콘텐츠의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과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이 커지는 등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축시킬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온라인비디오물의 원활한 유통 기반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자체등급분류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비디오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로 정의함 (제2조제12호의2 신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함 (제50조의2 신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제50조의3 신설)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하여금 자체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함 (제50조의4 신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조정 요구, 직권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결정 취소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제50조의6 신설)	2022-09-2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⑥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 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 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 등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제50조의7 신설) ⑦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 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제50조의8 신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등 불법 온라인비디오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제70조제7항 신설)	
환경부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9.27. 시행) 포괄수출* 또는 포괄수입**을 하는 폐기물 수출업자·수입업자의 폐기물의 적정한 수출입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폐기물 수출입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포괄수출계획서 또는 포괄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전체 기간의 폐기물에 대하여 보증금 예탁 또는 수출입 보증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 수출입예정월의 폐기물에 대해서만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후 폐기물을 수출입할 때마다 해당 폐기물에 대한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포괄수출: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것 ** 포괄수입: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가 두 번 이상 수입하는 것	2022-09-27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 6. 9. 공포, 2022. 6. 10.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 (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②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 (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음료를 구매한 영업표지와 동일한 영업표지의 매장에 반납, 1회용컵 1일 반환 수량 조정 (30개→20개) ※ 의견 제시기간 :9/26(월)~11/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	2022-09-26
	• 「환경영향평가 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22.4.26. 일부개정, '22.10.26. 시행)으로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체에 재대행 시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고려하여 승인하도록 재대행 승인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개정 규정을 반영하여 재대행계약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 및 검토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재대행 승인신청 첨부서류 추가 (안 제8조) -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발주자가 재대행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검토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추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계약현황, 사업별 조사진행정도, 보유 기술인력 현황 등)	2022-09-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재대행 승인 검토사항 추가 (안 별표 2) - 발주자가 재대행 계약 승인 시 재대행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승인 검토사항* 추가 *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가 자연생태조사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재검토기간을 연장 (안 제13조) ※ 의견 제시기간 : 9/28(수)~10/18(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	2022-09-28
국토 교통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제18941호, 22.6.10일 공포, 22.12.11일 시행)으로 추진 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건설업자 등의 이주비 등 제안을 금지하고, 건설업자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에, 자금 차입 신고의 세부내용, 절차 등을 규정하고, 건설업자 등이 이사비, 이주비, 이주 촉진비 등 제공을 제안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금지 범위를 규정하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금지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 위임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신탁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산정기준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과 그 외에 인용조문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재개발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산정 (안 제9조제1항제2호)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용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로 규정하여 전체 세대수 기준 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②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 (안 제13조제4항제1호의2) - 정비계획의 내용 중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변경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여 변경 절차를 간소화함	2022-09-2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③ 신탁사의 지정개발자 지정 요건 완화 (안 제21조제3호) - 신탁사의 지정개발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1/3 이상을 신탁 받는 것으로 완화하여,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사실상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④ 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안 제87조의2) -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을 자금차입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⑤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세부 범위 (안 제96조의2제1항) - 건설업자등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 금전·재산상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안을 금지하고, 해당 시점에 전국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나, 무이자로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함 ⑥ 건설업자의 시공 외 제안금지 세부 범위 (안 제96조의2제2항)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법 제7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정하여진 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을 법률과 달리 적용하는 것, 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각 목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처분 방법을 법률과 달리 적용하는 것,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법률과 달리 적용하는 것에 관한 제안 등 금지범위를 규정함 ⑦ 건설업자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범위 (안 제96조의3) -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객관적인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손익 계산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거나 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를 규정함 ※ 의견 제시기간 :9/27(화)~11/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로 제출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국토 교통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원 분담금, 분양가 등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이 확정되는 단계임에도, 총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서 등 서류 제출 의무가 없어 단순 추산액 제출로도 관리처분 인가가 가능한 실정임 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서 공사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산출근거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관리처분인가 시 공사 계약서 제출 (시행규칙안 제12조제1호다목)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신청서에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외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 의견 제시기간 :9/27(화)~11/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로 제출	2022-09-27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GMP 준수 여부의 확인·조사 및 위반시 적합판정 취소 등 조치와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의 교육·훈련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8970호, 2022. 6. 10. 공포, 12.11. 시행)됨 이에 따라, GMP 적합판정의 대상, 신청시 제출서류, GMP 준수 여부 확인·조사의 절차 및 제조·품질관리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 지정신청 서류 및 지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GMP 적합판정 절차 및 판정취소 기준 마련 등 - GMP 적합판정 신청 제출서류, GMP 준수 여부 확인·조사, 판정서 발급 및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적합판정 취소 등 조치 명령의 기준 등 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제도의 운영절차를 규정	2022-09-3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의약품등의 제조·품질관리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 규정 등 -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 조사관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법 제67조에 따른 약업단체 또는 의약품 관련 학과·전공이 설치된 대학 등으로 정함 - 제조·품질관리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품질관리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발급 절차를 규정 ③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행위 자진신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 마련 (안 별표8 제12호) -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행위 행위를 자진신고한 의약품 등 제조업자, 최초이면서 3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기준 위반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보고기한을 경과하여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을 보고한 의약품 등 품목허가권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 마련 ※ 의견 제시기간 :9/30(금)~11/29(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	•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한적 보유 허용(법 제20조) 등 개정 법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정책수요자들의 문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해석지침을 보완함으로써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운영 관련 규정 - 법상 CVC의 소유 주체인 “일반지주회사”는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임을 명시 (안 제13조 신설) -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적용시점 및 유예기간을 규정 (안 제14~15조 신설) -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행위제한 관련 규정에 대한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16~18조) ② 벤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및 자회사 지분보유특례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시점을 규정 (안 제4조 개정)	2022-09-3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③ 공동출자법인 해당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그 유형 및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10조 개정) ④ 중간지주회사에 대한 정의 및 행위제한 적용 범위 명확화 (안 제9조 신설) ⑤ 금융·보험업 범위, 발행주식 총수 등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 의견 제시기간 :9/30(금)~10/21(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정책과)로 제출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법제사법 위원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사외이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독립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내이사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대규모 상장회사의 임원 등의 업무는 국민의 재산상 권리와 국가의 경제적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내이사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마약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바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마약사범에 한정하여 이사 자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의 자본금을 가진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하여 사내이사가 마약사건으로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이사의 직을 면직시키는 등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542조의14 신설)	2022-09-28
기획재정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특례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감면대상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어 여의도가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서울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분야 스타트업 유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서울시가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금융허브 도시간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21조의21제1항)	2022-09-2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미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의 경우 방송통신설비, 인터넷 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 등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의2부터 안 제37조의4까지 신설 등)	2022-09-26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서 처벌하고 있지 않아,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되,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기본권 및 공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1항 및 안 제17조의2 신설)	2022-09-2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그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식품위생법」의 경우 식중독 발생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자가 현장을 훼손하는 행위 및 식중독의 원인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69조제2호의2 신설 등)	2022-09-23
환경노동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7인)」 현행법에 따라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황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 해당 사업주, 고용노동부 등에 의해 작성·보관되고 있고, 일부 자료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고 있음 이러한 안전보건자료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대상 사업장 전·현직 노동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로 인해 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첫째, 현행법상 안전보건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관련 규정이 고용노동부와 그 산하기관들의 내부규칙에 따라 제각각으로 정해져 있고, 보관기간도 3년 10년으로 짧음 둘째, 노동자들이 관련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일부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등)는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알려주도록 하였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업주가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퇴직한 노동자·협력업체 노동자 등에게는 알려줄 의무가 없음 전·현직 노동자들이 산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에 제출되는 안전보건자료 등 일부 자료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등에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2022-09-2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할 수는 있으나, 동 법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비공개 범위가 넓고(어떤 자료는 일반국민에게는 공개가 제한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전·현직 노동자들에게는 공개될 필요가 있음), 현실적으로 사업주의 영업비밀 주장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셋째, 현행 산안법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제5조제1항제3호), 그 정보가 무엇이며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그러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음 따라서 우선 법률에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목록을 만들고, 대상 자료에 대한 통합적·장기적 관리·보관 체계를 마련하며, 노동자들에게 그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개별 노동자들이 그 자료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안전보건자료의 목록을 제시하며, 고용노동부에게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장기 보관·관리 의무를 부여함 (안 제28조의2) ② 전·현직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자료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안 제28조의3), 정당한 이유없는 비공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 (안 제175조제2호의2) ③ 누구든지 자신이 근무했던 사업장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보건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의4). 다만 안전보건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안 제28조의5)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함 (안 제170조제1호의2)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7인)」 근로자가 화학물질 등의 건강 장애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고 내년 1월에 시행예정임 시행예정인 법은 건강손상자녀의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에 고려될 유해인자를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건강손상자녀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태어나 자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인자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 분류에 따르면 부모의 유해요인 노출 모두 자녀의 건강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	2022-09-28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이에 시행예정인 법을 현행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손상자녀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고자 함 (법률 제 1875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률 안 제91조의12)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화학물질의 화학적 특성, 취급 및 저장법, 유해성과 위험성, 사고시 대처방법 등의 사항을 기록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독성 세척제를 사용한 업체의 근로자들이 급성중독 판정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해당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잘못 기재된 사실이 밝혀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거짓 제공을 보다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공할 때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거짓 제공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 111조제4항 및 제16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등)	2022-09-29
국토교통위원회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0인)」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상승분 등을 제외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현행법 제12조가 정하는 부과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재건축조합이나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재건축부담금이 크게 상승하여 추진 중이었던 재건축사업이 중단되거나 노령의 은퇴자인 원주민이 재건축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입주 전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 이주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 부과율은 이 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로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주택 가격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유사한 취지로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2022-09-2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하여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 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택지가 부족한 도심지역의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안 제12조)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정감사	10/4(화) ~ 10/24(월)	<u>국정감사 종합일정표</u>		
국방위	10/4(화) 감사중지 후	전체회의	- 2022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농해수위	10/3(월) 17:00	안전조정위	- 안전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국회도서관	10/5(수)	「금주의 서평」 제597호 발간 - 재정전쟁 - 염명배 총남대 명예교수		
예산정책처	10/5(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발간		
입법조사처	10/4(화)	「NARS 현안분석」 발간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0/4(화) 13:30	메가 FTA 활용 경제위기 극복전략 세미나 - 한국 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수출·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윤창현 의원실, 한국경제신문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10/5(수) 14:00	선거법 개정을 위한 영남권 합동토론 및 결의대회 -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정치개혁의 첫 열매	김두관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10/5(수) 14:00	지역 대개조, '예비타당성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이채익 의원실,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10/5(수) 14:00	2022 제대군인 주간 제대군인정책 발전 세미나	윤주경, 김희곤, 김종민, 민병덕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주 뉴스레터(제154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9/26(월)	팩트북 2022-5호(통권 제97호) 발간 - 장애인 탈시설화	
	9/2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5호 발간 - EU ‘디지털서비스법(안)’ 입법 동향	
예산정책처	9/26(월)	「2022 대한민국 지방재정」 - 대한민국 지방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 안내서 발간	
입법조사처	9/28(수)	「NARS 입법·정책」 발간 -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9/26(월) 10:00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진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법 개정방향	김희곤·이정문 의원실	전경련회관 루비홀
9/26(월) 14:00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 망 이용대가 제도 문제없나?	박완주·김영주 의원실	의원회관 4간담회실
9/26(월) 15:0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과 과제 -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	박대출 의원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9/27(화) 10:00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 coupang 사례를 중심으로	민병덕·우원식· 박용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6간담회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백대용 변호사 |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변호사 |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변호사 |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변호사 |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 • 나인선 변호사 |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 • 최유리 변호사 |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변호사 |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변호사 |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 • 박건백 변호사 |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 • 김은혜 변호사 |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